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주요 Q&A

2022. 9.



중소벤처기업부

목 차

I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주요변경 사항

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1
2.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에 불과함에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 이유는? 2
3. 보상대상이 지난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이유는? 2
4. 2022년 2분기 보상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2

II 보상대상

5.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3
6.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3
7.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3

III 보상금 산정

8.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4
9.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5
10.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 6

11.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	6
12.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7
13.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7
14. 종합소득세 기장신고를 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 또는 고정비 비중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7
15. '20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8
16.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2019년으로 하는지?	8
17. 보정률을 100%로 상향한 이유는?	8
18.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9
19. 보상금의 상·하한액은?	9
20.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9
21.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한데 업종만 변경되었다면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9
22. 인건비 및 임차료에 해당하는 세부 비용 항목은?	10
23.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10

IV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24.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11
25.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12
26.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13
27.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한지?	13
28.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변경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에 대해 각각 보상금을 신청 가능한지?	13

- 29.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13
- 30.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손실보상금을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하는지? 14
- 31. 법인사업자 본점과 지점의 매출규모가 다른 경우 기업규모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 14

V 기타

- 32.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15
- 33.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15
- 34.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15
- 35.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시 업로드할 수 있는 첨부파일 유형은 무엇인지? 15

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 ① (보상규모) 64.9만개사에 약 8,857억원 지급(잠정)할 예정입니다.
*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원
- ② (방역일수)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가 4.17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방역이행일수는 최대 17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③ (하한액)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을 '22.1분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유지하여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④ (일평균 매출액)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인한 보상금 과소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 적용기간에 한정된 일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22.1분기 VS '22.2분기 비교 >

구 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21.4분기 중기업 제외)	좌동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2022년 4월 1일 ~ 17일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 ①일평균 손실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좌동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좌동 ① 다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경향을 고려한 일평균 매출액 산정 ② 매출·비용구조가 변동한 경우, 신규 개업으로 간주하여 변동 이후 과세자료를 적용
	보정률	100% ('21.4분기 90%)	좌동
	상한액	1억원	좌동
	하한액	100만원 ('21.4분기 50만원)	좌동
기타		▪ 손실보상금 정산금액 상계 ▪ 선지급금 잔액 공제	좌동

2.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에 불과함에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한 이유는?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하였습니다.
 - 그간,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최소 100만원을 지원
 - * (손실보상 하한액) <'21.3Q>10만원 → <'21.4Q>50만원 → <'22.1Q>100만원
 -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
 - 방역조치 해제에도 경기상황이 어려움

3. 보상대상이 지난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이유는?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미용 시설, 일반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 *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일반학원, 직업훈련기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또한, 방역조치 기간이 17일 (4.1~4.17)로 짧은 점이 반영된 결과 보상대상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 다만, 방역기간이 17일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하고, 매출액 산정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등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2022년 2분기 보상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 '22.2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22.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 ☞ (예시) 선지급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실제 산정액이 300만원인 경우, '22.2분기 보상금으로 200만원 (300만원-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II

보상 대상

5.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해당 사업장이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 사업장 이전 증빙을 위해 사업장의 前·現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손실보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III

보상금 산정

8.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금은 이전 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며, ①월별 일평균 손실액, 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③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100%)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2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사업자가 '22.2분기 중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인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2.1분기부터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 1억원, 하한 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여 '22.1분기부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21.3분기) 10만원 → ('21.4분기) 50만원 → ('22.1분기·2분기) 100만원

9.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월별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100%)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일평균 손실액은 ①'19년 대비 '22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②'19년 영업이익률과 ③'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①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19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매출액*에서 '22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매출액을 뺀 값입니다.

* 현금영수증발급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과세인프라매출액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까지 고려하여 매출 감소액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도 활용합니다.
- '19년 또는 '22년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역·시설 평균 통계값을 활용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합니다.

② 영업이익률은 '19년 매출액에서 '19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이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 개업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귀속연도의 신고자료가 반영됩니다.

개업 시기	소득세 신고자료
'18년 이전	신청인의 '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19년	신청인의 '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0년	신청인의 '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1년 이후	신청인이 속한 업종의 '19년 귀속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

- 소득세 신고자료 부재시, '19년 단순경비율을 활용합니다.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 ③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19년 매출액 대비 '19년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으로,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 개업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귀속연도의 신고자료가 반영됩니다.

개업 시기	소득세 신고자료
'18년 이전	신청인의 '19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19년	신청인의 '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0년	신청인의 '21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21년 이후	신청인이 속한 업종의 '19년 귀속 단순경비율(국세청 고시)

- 소득세 신고자료 부재시, '19년 업종 평균값을 활용합니다.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

10.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

-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던 2019년도와 비교하여 산정된 영업이익(매출액-비용)의 감소분으로, 매출감소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1.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

-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자료*를 활용합니다.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자료
 - 구체적으로는 ①해당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②연간 과세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비율을 곱합니다.

$$* \text{일평균 매출감소액}(22.4\text{월}) = \frac{\text{'19.4월 과세인프라} \times \text{'19. 현금조정}}{30} - \frac{\text{'22.4월 과세인프라} \times \text{기간보정비율} \times \text{'21. 현금조정}}{30}$$

** 기간보정비율 : 4월 전체의 인프라매출액을 4.1~4.17 기간의 인프라매출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 \text{N년 현금조정} = \frac{\text{해당 사업자의 N년 신고매출액 합산액}}{\text{해당 사업자의 N년 과세인프라매출액 합산액}}$$

12.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전자지급거래액)도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어,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13.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손실보상제도는 영업이익 감소분을 손실로 보고 있으며, 손실액 계산 시 개별 사업체의 인건비·임차료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영업이익 감소분을 손실로 간주하는 것은 국회 논의 및 민간전문가,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

- 예를 들어, '21년에 집합금지로 매출액이 0원으로 감소한 경우 보상액은 '19년 영업이익과 인건비·임차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 '19년 영업이익과 '21년 마이너스 영업이익(인건비 + 임차료) 차이만큼 보상하므로, 결과적으로 인건비·임차료가 보상금에 반영됩니다.
 - 특히, '22.1분기부터는 보정률을 100%로 상향해 보상금 산정하고 있어 인건비·임차료를 온전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종합소득세 기장신고를 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 또는 고정비 비중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영세 자영업자 등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합니다.
 -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합니다.

15. '20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일평균 매출감소액) '20년 이후 개업자의 경우, 해당 지역 내 동일 시설의 '19년 대비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 비율과, 업체별 매출 규모 등을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합니다.
- (영업이익률 등) '19년 또는 '20년 개업자는 각각 '20년 또는 '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고, '21년** 또는 '22년 개업자는 '19년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 기준연도인 '19년 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또는 '21년의 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해당 지역 내 동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보정

** '21년 개업자의 경우, 개업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21년 소득세 신고자료상 영업 이익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을 고려

16.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2019년으로 하는지?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상,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자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할 경우,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19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7. 보정률을 100%로 상향한 이유는?

- '21.3분기 보정률은 80%, '21.4분기 보정률은 90%였으나 소상공인 등이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22.1분기부터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18.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9. 보상금의 상·하한액은?

-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여 '22.1분기부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 ('21.3분기) 10만원 → ('21.4분기) 50만원 → ('22.1분기·2분기) 100만원

20.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
-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30%, ^(2회)50%, ^(3회~)100% 감액하며,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

21.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데 업종만 바뀌었다면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업종이 바뀌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 개업한 사업자로 간주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확인보상, 이의신청은 별도 자료를 통해 조정할 예정

① 기준연도*('19년, '19년 개업시 '20년)와 '21년의 주업종**이 상이할 것

* ('18년 이전 개업) : '19년 / ('19년 개업) '20년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연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② ^기준연도 주업종이 '2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21년 주업종이 기준연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일 것

③ 기준연도에 가장자료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기준연도와 '21년간 매출 증감과 영업이익 증감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것

신속한 보상을 위해 '21년 이후 과세자료만으로 최초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이의신청을 통해 증빙하신 업종 변경시점을 적용한 보상금을 재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해당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22. 인건비 및 임차료에 해당하는 세부 비용 항목은?

소득세 신고유형(▲기장신고, ▲추계신고)에 따라 다릅니다.

< 신고유형별 인건비·임차료 인정 항목 >

신고유형		인건비 인정 항목	임차료 인정 항목
기장신고	복식부기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 일용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 리스료
	간편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료 ■ 노무비 ■ 복리후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단순경비율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없음 (단순경비율에 모두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없음 (단순경비율에 모두 포함)</p>

23.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IV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24.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9월 29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접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① (신속보상)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목)부터 시작합니다.

-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공휴일 포함) 5부제가 실시됩니다.
- 10월 4일(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개시하여 온·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22.2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5부제 (온라인)	9.29(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2부제 (온·오프라인)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8(토)	10.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② (확인요청·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은 모두 10월 4일(화)부터 시작됩니다.

- * 신속보상 대상 미포함(확인요청) 또는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위한 경우(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은 첫 6일간(공휴일 포함), 오프라인 신청은 첫 4일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22.2분기 확인보상·확인요청 신청일 현황 >

온라인 신청	10.4(화)	10.5(수)	10.6(목)	10.7(금)	10.8(토)	10.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월 29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 또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5.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국세청) 과세자료 / (지자체)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

-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6.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27.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한지?

- 손실보상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28.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변경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에 대해 각각 보상금을 신청 가능한지?

-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변경 전후의 각 사업자가 이행한 방역조치 일수만큼 보상금이 산정·지급됩니다.

29.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0.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손실보상금을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하는지?

- 각각의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마다 시행한 방역조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합니다.

31. 법인사업자 본점과 지점의 매출규모가 다른 경우 기업규모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

- 신청인(법인)의 기업규모(▲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가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 *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평균매출액을 활용하므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업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다만, 신청인이 가맹점인 경우에는 가맹본부(법인)와 별개인 사업체로 보아 해당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만으로 기업규모를 판단합니다.

32.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29일(목)부터 한달 동안은 손실보상 상담사 1,000명, 전화회선 10,000개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온라인 채팅상담(www.손실보상114.kr)도 상담사 45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는 **일일 4회** (▲10시, ▲14시, ▲19시, ▲익일 3시) 입금해 드릴 예정이며,
- **10월 1일(토)부터 10월 3일(월)까지, 10월 17일(월)**(주말 및 공휴일 제외) 부터는 **일일 3회**(▲10시, ▲14시, ▲18시) 예정입니다.
- ※ 10월 8일(토)부터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4.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 입금자명은 “공단손실보상”으로 표기됩니다.

35.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할 수 있는 첨부파일 유형은 무엇인지?

- 확장자가 PDF, JPG, JPEG, PNG 등에 해당하는 파일입니다.